



General Assembly

Distr.: General
2 August 2019

Original: English

제 74 차 회기

잠정적 의제 72 (c)*

인권 증진 및 보호: 인권 상황 및 특별 절차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사무총장 보고서

요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본 보고서는 유엔 총회 결의 73/180 에 의거하여 제출된다. 2018 년 9 월부터 2019 년 7 월까지 해당국 내 인권 상황 개괄을 담고 있으며, 관련하여 해당 기간 동안 정부가 유엔과 협력한 활동도 기술했다.

*Disclaimer: This is not an official translation of the United Nations.
Refer to A/74/268 for the official English version of this document.*

A/74/268

* A/74/150

목차

	쪽
I. 서문	3
II. 정치적 상황	3
II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개괄	4
A. 생명,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4
B.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6
C.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D. 국제 납치 및 가족 분리	9
E.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10
IV.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과 관련한 유엔과 정부 간 협력	12
A. 유엔 정부간기구 및 조약체와의 협력	12
B. 인권최고대표사무소	13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유엔 기관 활동	15
V. 결론	16
VI. 권고	16

I. 서문

1. 본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총회 결의 73/180 에 의거하여 제출되며, 2018 년 9 월 유엔 총회 제 73 차 회기에 제출한 사무총장 보고서(A/73/308) 이후 해당국 내 인권 상황 최신 정보를 담고 있다. 본 보고서는 특히 생명,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정보에 접근할 권리, 결사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를 할 권리, 민주주의 권리, 국제 납치 문제 및 가족 분리,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II. 정치적 상황

2. 남북 정상회담이 2018 년 4 월과 5 월 개최된 이후 세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2018 년 9 월 18 일에서 20 일 사이 평양에서 개최됐다. 정상회담 후 발표된 선언문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도록 협의해나갈 것을 명시했다.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하고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한 내용을 포함한다.¹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동선언문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명시했고, 미합중국이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기”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를 표했다. 더하여 남북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간 정상회담은 2019 년 2 월 27 일과 28 일 하노이에서 열렸으나, 합의없이 끝났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한반도 내 화해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재차 의지를 표했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국은 2018 년 3 월 이후 각각 2019 년 1 월 7 일부터 10 일까지 제 4 차 정상회담을, 2019 년 6 월 제 5 차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및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재차 지지했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은 2011 년 이후 처음으로 4 월 25 일 러시아연방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한반도 평화 확립과 안보와 역내 비핵화, 제재 및 경제 협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¹ 선언문 다음 참조: <https://english1.president.go.kr/BriefingSpeeches/Briefings/322>.

* (번역주) 본 보고서 각주에 인용된 자료는 영문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II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개괄

A. 생명,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7.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구금을 경험한 이탈자 진술을 받아 분석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면담한 이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주로 량강도와 함경북도 지역에서 북중 국경을 넘어 탈출했다. 진술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안 기관 관계자로 인해 생명,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한 혐의가 발견됐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은 출신 국가를 떠날 권리 등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체포 및 구금된다. 더군다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하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 9 조와 14 조에 명시된 기본적인 절차도 보장되지 않은 채 앞서 언급했듯이 자유가 박탈된다.² 분석한 사례 대다수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북중 국경을 넘고, 이후 체포와 북송을 경험한다.

9. 북송 후 국가보위성(이하 “보위성”) 관계자에게 인계되며, 수일에서 수 개월에 이르기까지 구류장에 구금된다. 보위성 관계자는 수감자를 조사하여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대한민국 국민과 접촉했는지, 기독교 단체와 만났는지, 혹은 기타 반국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보위성 관계자가 앞서 언급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인은 보위성에 남아 추가적인 조사를 받으며 중국에는 보위성이 운영하는 관리소에 수감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반국가 행위를 했을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수감자는 대체로 인민보안성(이하 “보안성”)으로 인계되어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는다.

10. 형기를 받아 관리소에 수감된 이들로부터 직접 수집된 정보는 드물지만, 수집된 진술 자료에 따르면 형기 결정 등 전체 과정이 사법 감독없이 이뤄진다고 판단된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보위성에 의해 구금됐고, 이후 형기를 받아 감옥이나 노동수용소로 갔던 이들로부터 여러 건 일관된 일차 진술을 받았다. 다음은 량강도와 함경북도에 위치한 여러 구금 시설과 관련하여 수집한 진술을 요약한 내용이다.

11. 북송 후 보위성에 구류되는 시기에는 보위성 미결구금 시설인 구류장에 수감된다. 구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남성과 여성은 별도 수감된다. 옷을 벗고 강도 높은(invasive) 몸 수색을 받는다. 가령 교도관이 수감자에게 반복적으로 쪼그려 뛰기를 시켜 체강에 돈이나 기타 물건을 숨기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수감자들은 이후 조사를 받으며, 대체로 며칠동안 매일 조사를 받거나, 일부 한 달이나 그 이상 기간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조사 및 구금 기간 전반에 걸쳐 방망이나 금속 막대 등으로 심각하게 구타 및 학대를 당하여 신체 및 정신적 해를 입는 사례가 흔히 발생한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집한 사례로는 강도 높은 몸 수색시 여성 수감자를 대상으로 교도관이 성폭력을 저지른 사례도 있다. 수감자가 이러한 폭력을 보고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다.

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당 규약에 1981년 9월 14일 가입했다.

12. 반국가 행위에 관련되지 않았다고 파악된 수감자는 보안성 구금 시설로 이전된다. 해당 구금 시설 안에서 상당히 가혹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으며, 수 일 혹은 수 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 면담대상자가 조사를 받는 동안 고통을 야기하며 신체적으로 해를 입히는 가혹한 구타가 이뤄진다고 진술한 경우가 빈번하다. 감방은 초만원이며, 눕기에 공간에 충분치 않다. 과거 구금됐던 이들은 상당히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며, 충분한 식량이 제공되지 않아 영양실조, 질병, 때로 사망까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보위성 구금 시설과 마찬가지로 보안성 구금 시설의 교도관은 수감자가 하루종일 앉아있거나 혹은 무릎을 꿇고 있도록 했는데, 한 시간에 2분 정도 혹은 그보다 더 적은 시간 몸을 펼 수 있는 시간을 준다. 허락을 받지 않고 움직일 경우 개별로 혹은 단체로 체벌이 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여성 수감자가 교도관 또는 관계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사례도 수집했다.

13. 미결구금 된 수감자에게 법정에서 구금의 합법성을 확인받거나 법적 조력을 받을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에 명시된 다음의 내용을 상기하고자 한다.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모든 이는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을 보장받는다.³ 진술에 따르면 수감자는 조사가 마무리될 때, 특히 피의자가 로동단련대에 최대 6 개월까지 구금되는 경우에는 통보 형식으로 형기를 알게 된다. 로동단련대에서 수감자는 강도 높은 노동에 최대 하루 12 시간까지 동원된다. 이 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사상자를 낳기도 한다고 보고된다. 수감자는 충분한 식량을 제공받지 못하나 수감자 가족이 때때로 식량을 가져올 수 있다. 영양실조는 상당히 만연한 것으로 파악된다.

14. 증인 진술에 따르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반국가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수감자는) 재판에 받더라도 형식적인 재판에 지나지 않는다. 변호인을 선택할 수 없고, 변호인은 재판에만 출석하며 변호를 하지도 않는다. 무죄 선고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기록한 증인 진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2 년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보안성이 운영하는 교화소에 수감된다.

15.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함경북도 위치하는 전거리 교화소 등 일반 감옥에 구금됐던 이들로부터 진술을 받았다. 일부 진술에 따르면 남녀 수감자 약 3000 명 가량이 전거리 교화소에 구금되어 있다. 영양불균형이 만연하며, 기아로 인한 사망도 몇 건 파악됐다. 결핵, 간염, 장티푸스, 흉막염 등 질병이 만연하고, 의료 처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여러 면담대상자는 교도관이 가혹하게 구타하며, 일부 수감자

³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 9(3)조는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라고 명시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제 35 호(CCPR/C/GC/35, 문단 38)에서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다룬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미결구금은 예외적인 상황이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입장을 유지했다. 관련하여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Communication No. 526/1993, Micheal and Brian Hill v. Spain (1997년 4월 2일 제 59차 회기 채택) (A/52/40 (vol. II), annex VI.B, 문단 12.3).

사망을 초래했다고 진술했다. 수감자는 장시간 강제 노동에 동원되며, 무장한 교도관이 감시한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일과 관련하여 사고로 수감자가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다. 구금된 수감자가 탈출을 시도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혹은 기타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공개 처형된 사례도 있다. 독방에 감금되어 결국 사망한 사례도 있다.

16. 구금 시설 및 감옥에서 보위성과 보안성 관계자가 자행하는 자의적 체포, 구타, 강제 노동, 처형 및 여러 부당한 대우 및 학대는 광범위하게 제도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17. 관리소나 교화소, 또는 이송 대기 시 구금되는 집결소에 구금된 이들은 위험한 조건 속에서 강제 노동에 동원되며 적절한 식량이나 의료 접근성이 제공되지 않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거주 환경에 노출된다.

18.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집한 진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교정 제도 상 만연한 부패를 드러낸다.⁴ 뇌물을 내면 체포 및 구금을 피하거나 형기를 줄이거나 아예 형을 살지 않거나, 구타를 피하거나, 강도가 낮은 강제 노동에 동원될 수 있고, 또한 가족 방문도 가능할 수 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또한 수감자 대상 착취가 현금 갈취를 넘어 강간 등의 성폭력까지 이를 수 있다는 진술을 받았다.

19. 대규모 관리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상당한 우려를 낳는다. 해당국 정부는 관리소 존재를 지속적으로 부인한다.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동안 관리소에 구금됐던 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한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 2019년 5월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 6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구금되어 있다.

B.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국내외 이동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 12 조는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동의 자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국민은 국내 이동 시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이동할 경우 강제 노동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2. 입출국 권리의 행사도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정부는 변칙적으로 국경을 건너는 행위를 범죄화하고, 변칙적으로 국경을 건넌 이들 일부에 “조국반역죄” 혐의를 부과한다.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1137명이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이 가운데 여성은 969명(85 퍼센트)이다.⁵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⁴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권리의 대가(代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의 침해” 참조(2019년 5월):

https://www.ohchr.org/Documents/Countries/KP/ThePriceIsRights_EN.pdf

⁵ 대한민국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책” (2019년 6월 20일 참조 기준)

변칙적으로 북중 국경을 넘고 송환된 후 자의적 구금, 부당한 재판, 고문, 성희롱 및 기타 학대를 받은 개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했다.

23.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을 비롯하여 복수의 국가는 이탈자들이 강제로 송환될 경우 고문을 비롯한 인권 침해에 당할 위험이 상당하며, 송환금지원칙(non-refoulement)에 반하는 처사라며 우려를 표했다. 9세 여아를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 일곱 명이 2019년 4월 28일 요녕성에서 체포됐으며, 이후 중국과 관계 당사자가 해당 건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또한 자국을 떠나려하는 이들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할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자국을 떠날 자유를 누리는 데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⁶ 국경을 건너는 대다수는 “브로커”의 도움을 받으며, 대체로 “브로커”가 곧 인신매매범이다. 대한민국에 도착한 개인 다수는 브로커에게 수백만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정착 지원금을 수령하는 대로 빚을 갚기로 합의한 상태다.

25.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면담에서 확인된 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난 여성 다수는 북중 국경을 넘어 인신매매를 당한다. 중국에서 남성에게 매매되거나 성 노예 또는 노동 착취 대상으로 매매된다. 피해자들은 대체적으로 보호를 받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당국에 알려질 경우 체포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송환된 이들은 구금되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에 놓인다.(위 문단 8-18 참조).

C.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에 따라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집한 증인 진술에 따르면, 당국에 비판적일 경우 일반범 혹은 정치범 감옥에 수감될 위험이 있다. 이에 더하여 감시망이 방대하게 구축되어 있고 정보원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연설, 집필 및 예술적 표현을 스스로 검열하는 경우가 만연하다.

27. 헌법 제 67 조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 정부는 해당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며,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의 제 19 조, 제 21 조 및 제 22 조 등에 따른 국제 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28. 정부는 선전선동부를 통해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전수 통제하려 한다. 정부는 독립적인 방송, 출판 또는 온라인 미디어의 출현을 막고, 국가가 공식적인 표현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결과적으로

⁶ 제 3 자에 의한 학대와 관련하여 국가가 충족시켜야 할 인권 의무에 관해서는 각주 제 6 호에 언급된 “권리의 대가” 보고서 24-25 쪽 및 33-34 쪽 참조.

언론은 예외없이 정부 사상과 정책을 전달하며, 국민의 충성심을 키우고 권위에 대항하지 못하려는 목적이다. 해외 언론인 모두는 이동의 자유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자 대상 개별 취재 여부 등에 있어 엄격하게 통제 받는다.

29. 민간 출판을 통한 표현의 자유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1975년 제정된 출판법은 1995년과 1999년 수정됐으며 “공민은 저작 또는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나, 제 2 조에서 “혁명적 출판 전통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위업을 고수 발전”시키는 활동으로 제한한다. 또한 제 47 조에서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 풍조가” 퍼지지 않도록 금지한다. 형법은 출판을 통한 자유로운 표현을 사실상 범죄화하는데 제 214 조는 출판법을 어길 시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제 62 조는 “반국가목적으로 선전, 선동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교정 목적의 노동에 처한다고 명시하며, 211 조는 “국가에 대한 불신을 조성할 수 있는 허위 풍설을 꾸며냈거나 류포시킨” 이들은 1년 이하의 교정 목적의 노동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30. 정보 접근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통제되며,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로 특히 대한민국으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수신하거나 소유한 것으로 파악된 경우 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 183 조 및 제 184 조는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전자 매체 같은 것”을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유포하였거나 듣거나 재생산하는 경우 교정 목적의 노동을 통해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제 185 조는 “반국가목적이 없이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교정 목적의 노동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보안성, 보위성, 검찰소, 조선로동당 관계자로 구성된 검열단뿐 아니라 “109 상무”⁷라 알려진 별도 조직을 통해 단속한다. 하지만 은밀하게 외국 음악을 듣거나 외국 영화를 보는 경우가 점점 증가한다고 알려지며, 국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처벌을 피할 수 있다.

31. 휴대전화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국제 전화 및 외부 정보 수신은 엄격하게 통제된다. 형법 제 222 조는 “비법적으로 국제 통신”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강제노동단련형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보위성은 해당 조항을 적용하고자 신호 방해 기술 및 휴대전화 사용 감시 기술을 사용한다. 국제 전화를 거는 브로커 및 인신매매범 등은 뇌물을 주고 위조항 적용을 피할 수 있다.

32. 인터넷은 고위급 공무원 및 특정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조선컴퓨터센터가 걸러 낸 정보만 사용자가 볼 수 있다. 이보다 좀 더 많은 수의 일부 연구 기관 및 정부 관계자 등은 엄격한 규제와 통제가 적용되는 “인트라넷”을 사용한다고 알려진다.

⁷ “109 상무”는 2004년 발족되어 북측 내 검열을 수행한다. 외국 매체, 출판, 라디오, DVD 등을 단속한다. “109”는 김정일이 외국 매체 및 출판을 통제하도록 지시를 내린 날짜인 10월 9일에서 따온 것이다. 해당 조직은 지역 단위 검열 조직으로 이루어지며,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 재판소, 보위성 및 보안성 등 여러 기관에서 관계자를 파견하여 109 상무를 조직한다.

33.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있어, 정부 주도 회의 및 군중 집회의 경우에만 공개 집회가 가능하다. 형법 제 209 조는 국가에 반하여 “집단적으로 소동을 일으킨 자”는 1년 이하의 교정 목적의 노동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한다.

34.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있어, 대안을 제시하거나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부재하다.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당 단체를 통해 대규모 동원 등이 이뤄진다. 해당 단체는 조선소년단,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협회, 민주녀성동맹 등이 있으며, 모두 조선로동당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국가는 또한 강제적인 자기 비평 시간과 정치적 교육을 통해 국민을 통제한다. 하지만 자기 비평과 정치적 교육을 통한 국민 통제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데, 뇌물을 내고 참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35.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대의원 선거가 3월 10일 열렸고, 687명이 선출됐다. 투표율은 99.99 퍼센트로 기록됐다.⁸ 다만 사전에 승인된 입후보자에게 반드시 표를 주어야 했다.

D. 국제 납치 및 가족 분리

36.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합의된 대로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상봉 행사가 2018년 8월 20일 개최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양측에서 101세 남성 한 명을 포함하여 총 833명이 한국전쟁 이후 헤어져서 만날 수 없었던 가족과 만났다. 가족 상봉 행사는 2000년 처음 이뤄졌고, 이후 가족과 만나고자 등록한 총 13만 3299명 가운데 2만 761명만 참여할 수 있었다. 더욱이 현재 생존해있는 가족 분리 피해자 가운데 약 65 퍼센트는 80대 혹은 그 이상의 연령으로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가족 분리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보여준다.⁹

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시 금강산 지역에 가족이 상봉할 수 있는 상설면회소를 마련하고 화상 상봉이나 영상 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대한민국은 화상 상봉 장비를 구매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보낼 준비를 했고, 13개소 화상 상봉 센터 개보수를 시작했다. 남북 양측이 마지막으로 화상 상봉 행사를 열었던 2007년 이래로 해당 센터는 사용된 적이 없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특별보고관은 가족 분리 피해자가 고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남북 양측에 대면, 정기 서신 교환, 전화 연락 및 화상 상봉 등을 통하여 가족 분리 피해자의 상시적인 연락을 가능토록 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⁸ KCNA Watch,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2019년 3월 13일.

<https://kcnawatch.org/newstream/1552459584-11602048/report-on-results-of-election-of-deputies-to-spa-issued/> 참조.

⁹ 해당 수치는 2019년 4월 30일 기준 대한민국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서 확인했다.

38.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이하 “실무그룹”)은 제 116 차 회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새로이 실종 12 건을 전달했고, 제 117 차 회기에서 16 건, 제 118 차 회기에서 14 건을 전달했다. 실무그룹은 2019 년 5 월 22 일을 기준으로 해당국 정부에 미결 실종 275 건을 전달했다. 해당 실무그룹이 처음 설립된 1980 년 이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전달된 강제 실종 사례 중 소명된 건은 없다. 실무그룹은 제 116 차 및 제 117 차 회기 보고 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계속해서 정형화된 답변만 보내는 것에 실망을 표했다. 실무그룹은 2015 년 5 월 22 일 해당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여러 차례 요청을 반복했으나 정부측에서 답을 주지 않았다.

39. 대한민국이 한국전쟁 이후 자국에서 납치됐다고 판단한 516 명 생사는 아직까지 파악된 바 없다. 1970 년대와 1980 년대 납치된 일본 국적자 12 명 생사도 확인된 바 없다. 일본 정부는 양자 정상회담과 중국,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 연방 및 미국과의 장관급 회담을 통하여 납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미국은 2019 년 2 월 하노이 회담 시 납치 문제를 제기했다고 알려진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조건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납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자 김정은은 2019 년 1 월 1 일 신년사와 지난 4 월 12 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국민 삶의 수준 개선과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¹⁰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제 인권법 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조치를 취하여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점진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관에 따르면 2019 년 전체 인구 43 퍼센트가 넘는 약 1090 만 명 가량이 영양부족을 겪는다. 의료, 물, 위생 및 청결 문제도 여전하다. 세계기아지수는 2000 년 40.3 퍼센트에서 2017 년 (“심각”으로 분류되는) 28.2 퍼센트로 떨어졌다가, 2018 년 34 퍼센트로 올라갔다. 이는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전체 인구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섭취해야 하는 단백질 양의 25 퍼센트, 지방 양의 30 퍼센트만을 소비하고 있다. 현재의 동물성 식품 생산은 영양부족을 해결하려는 노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에 부족하다. 2472 개 가구가 속하며 추산 인구가 9888 명인 협동농장 네 곳을 예로 들면, 2014 년 생산된 축산 식품은 2 만 1700 킬로그램으로, 인구 한 명당 2.19 킬로그램 (하루당 6 그램) 이 소비 가능하다. 약 1000 만 명 가량이 안전한 식수 접근이 어렵고 16 퍼센트

¹⁰ 김정은 신년사: <https://www.herald.co.zw/full-text-of-dprk-supreme-leader-kim-jong-un-new-year-address/>. 최고인민회의 연설: <https://www.nkeconwatch.com/2019/04/14/kim-jong-uns-speech-at-the-spa-in-april-2019/>

가량은 기본적인 위생 시설 접근이 불가하여 질병과 영양실조 위험이 높다.

42. 근래 농업 생산량 감소는 식량 불안정을 악화시켰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2019년 5월 공동으로 식량 안보를 평가한 보고서(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에 따르면 2018년 총 식량 생산량이 490만 톤으로 평균 이하로 예상된다. 이는 한 해 전 평균 근접치였던 양보다 12퍼센트 감소한 양으로 2008/09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1010만명 가량은 식량 불안정을 겪으며, 긴급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한다. 2018/19년 양곡연도(2018년 11월—2019년 10월) 곡물 수입 필요량은 159만 톤으로 예상된다. 공식 상업용 수입 계획량은 20만 톤이며(이미 수령했거나 약속된) 식량 지원량이 2만 1200톤인 상황에서 양곡연도 전체에 걸쳐 약 136만 톤이 부족하다.

43.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국제 인권 규약(이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에 따른 의무를 포함하여, 국민의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관련하여 인권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¹¹ 식량권과 관련하여 최대 100만 명이 사망한 심각한 기근 이래¹² 약 25년 간 만성 식량 불안정이 이어졌지만,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정책적 및 제도적 개혁을 아직도 하지 않았다.¹³ 국가 재정 관리 부실과 자금 오용이 이어진 결과 이러한 상황이 빚어졌을 수 있다. 가령 국가 재정과 인력을 군사력에 불균형적으로 투입하면서 국민을 위한 복지 제도가 희생되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강조된 바 있다. (A/HRC/25/CRP.1, 문단 588-599, 637-649).

44. 정부가 국민의 경제권 및 사회권 실현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관행을 이어간다는 우려가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 규약 제 2(2)조는 해당 규약에 언급된 권리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관에 따르면 지방 간, 또한 농촌과 도시 간 격차가 여전히 심각하다. 가령 량강도 농촌 지역 발육부진 비율은 32퍼센트로 평양의 10퍼센트와 비교된다. 평안북도에서 6개월에서 23개월 사이 아동 14.8퍼센트만이 최소한의 수용가능한 식사를 하는데, 평양은 그 비율이 54.3퍼센트이다. 농촌 지역에서 아동 24.4퍼센트가 발육부진을 겪으며, 도시는 해당 비율이 15.6퍼센트이다. 농촌 지역 거주자

¹¹ 권리의 점진적인 실현 조항은 식량권에도 적용되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 규약 제 2조에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아동권리협약 제 4조와 장애인인권협약 제 4(2)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에 명시된 세 국제 인권 협약 당사국으로, 국제법 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진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제 3호(1990) 당사국 의무의 성질(E/1991/23E/C.12/1990/8, annex III, 문단 10) 및 일반논평 제 14호(2000)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참조한다(E/C.12/2000/4, 문단 43-39).

¹² Stephan Haggard, Marcus Noland 공저, *Famine in North Korea: Markets, Aid, and Re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73-76 쪽 참조. Hazel Smith, *North Korea – Markets and Military Rule*, (CUP 2015) 148 쪽 참조.

¹³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권리의 대가” 보고서 12, 15, 16 쪽 참조.

56 퍼센트가 안전하게 관리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는 데 반해, 도시는 해당 비율이 29 퍼센트이다. 평양 거주민 97 퍼센트가 기본적인 위생 시설 접근이 가능한데 반하여 황해남도에는 69 퍼센트만이 접근 가능하다. 이는 보건권을 포함한 여타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경제권 및 사회권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부 차원의 의무를 어느 정도로 다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관련 데이터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 국제공동체가 상황 파악과 모니터링을 위해 국가에 접근하는 것조차 제한되기 때문에 더욱 데이터 파악이 어렵다. 데이터 부족과 제한 조치 때문에 국제공동체가 적절하게 맞춤형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국민은 자체적으로 대응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데, 가령 국민은 식량 불안정 수준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어서, 기초적인 상행위 등을 통한 대안을 찾아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46.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모니터링에 따르면 소규모 상행위가 식량 및 생활용품 등 생활 필수품의 국가 배급이 충분치 않은 것의 대안으로 역할할 수 있으나, 정부는 이러한 상행위가 발전하도록 지원하지 못했다. 일부 집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3 가량이 일부 혹은 완전하게 민간 상행위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¹⁴ 비공식 부문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들은 여전히 자의적 체포, 구금 및 처벌에 노출되는데, 형법이 모호하게 쓰였고 법치주의 및 적법 절차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47.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모니터링에 따르면, 상행위에 참여한 이유로 체포되거나 처벌을 받는 상황이 부패를 더욱 심화시키며, 인권 전반에 부정적이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적합한 생활 수준을 확보하고자 국내외 여행, 국외 취직, 국외 통신, 국외 물건 취득, 국내 상거래 참여 등을 통해 대응하지만, 이러한 행위 모두가 사실상 범죄화되며 결과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이들은 국가 공무원 착취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자유권, 이동의 자유, 노동권 등 국제법상 보편적이며 양도불가능하다고 보는 권리의 행사 여부가 국가 공무원과 브로커에게 돈을 낼 수 있는지에 여부가 달렸다.¹⁵

IV.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과 관련한 유엔과 정부간 협력

A. 유엔 정부간기구 및 조약체와의 협력

4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9년 5월 9일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실무그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 3 차 검토를 진행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 보고서(A/HRC/WG.6/33/PRK/1), 유엔 차원에서 수집한 정보 모음(A/HRC/WG.6/33/PRK/2), 이해관계자 제출

¹⁴ Jieun, Baek, "The opening of the North Korean mind", *Foreign Affairs*, 1 월/2 월 2017.

¹⁵ 추가적인 내용은 "권리의 대가(代價)" 참조.

정보 요약 (A/HRC/WG.6/33/PRK/3) 등을 바탕으로 검토가 진행됐다. 87 개 대표단이 262 개 권고를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특별보고관과의 협력, 성분 제도를 근거로 한 차별, 강제노동, 정치범 수용소, 고문 및 학대 관련 권고를 포함하여 63 개 권고를 우선적으로 거부한 상태이다. 국제시민사회단체는 정보를 제출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출된 보고서는 없다. 실무그룹은 5 월 14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시된 권고를 채택했다. 최종 결과 보고서는 권고 전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반영하여 2019 년 9 월 9 일부터 27 일까지 개최되는 인권이사회 제42 차 회기 때 채택된다.

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특별보고관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인권이사회 결의 25/25 에 따른 협력을 모두 거부했다. 현재 특별절차 위임권한 수행자 가운데 국가 방문 초대를 받은 경우는 없으며, 앞서 위임권한 수행자 한 명만 공식 국가 방문을 수행했다.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이 2017 년 5 월 3 일부터 8 일까지 방문했다.)

50.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2407(2018)와 2464(2019)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안보리 제재 조치 이행을 돕도록 전문가패널 (이하 “제재전문가패널”) 위임권한을 연장했다.¹⁶ 총회는 결의 73/180 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국 내에서 오랜 기간 자행했고, 여전히 자행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와 이러한 인권 침해의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을 규탄했다. 앞서 조사위원회는 해당 인권 침해가 반인도범죄에 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이사회는 결의 40/20 을 통해 정부가 즉각 조치를 취하여 범죄와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촉구했다. 이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위임권한을 일 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2018 년 12 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보고서를 처음으로 제출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제 3 차 정기보고서는 2008 년 6 월 30 일 제출 기한을 넘겼고,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제 3 차 정기보고서는 2004 년 1 월 1 일 제출 기한을 넘겼다.

B. 인권최고대표사무소

52.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서울 현장사무소(이하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인권이사회 결의 25/25 에 의거하여 모니터링, 기록, 역량 강화 및 지평 확대 노력을 이어갔다. 관련하여 유관국 정부, 시민사회단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 해당국 내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활동가 등 기타 관계자와 협력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권이사회 결의 25/25 와 서울유엔인권사무소와의 협력 등 해당 결의에 따른 일절의 협력을 거부했다.

53.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동안 개별 진술을 수집했고 인권 침해 혐의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노력을 이어갔다. 2019 년 5 월 기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 330 명과

¹⁶ 제재전문가패널은 2020 년 3 월 6 일 이전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면담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통일부에 따르면 해당 집계를 시작한 이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 총 3만 2706 명이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 가운데 서울유엔인권사무소가 설치된 2015 년 이래 5186 명이 입국했다.¹⁷

54.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19 년 5 월 28 일 “권리의 대가(代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의 침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부가 자국 국민 경제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을 분석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국민의 경제권을 보호하지 못하는데, 먼저 국가 기관이 국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다음으로 국민이 자체적으로 물건을 생산, 판매 및 구매하여 기본적인 필요를 접근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주지 못한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만연한 부패를 강조한다. 국민은 기초적인 시장에서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자의적 체포, 구금 및 처벌을 피하고자 국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다.

55.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정무평화구축국(DPPA)은 2019 년 5 월 13 일부터 16 일까지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제네바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서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유엔 인권 제도 개괄을 설명했고, 특히 특별절차 위임권한 수행자, 조약기구 및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 제시된 권고 이행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보고서 제출, 이주 문제 및 장애인 인권 관련 주제를 다뤘다. 워크숍 참석자는 아동권리위원회가 당사국을 검토하는 것도 참관했다.

56. 인권이사회는 2019 년 3 월 22 일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책임 규명 업무를 2 년 간 연장하여 해당 노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고, 회원국, 국제 및 역내 단체, 시민사회단체 및 기타 관계자로 하여금 책임 규명 노력에 힘을 보태주기를 촉구했다. 특히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책임 규명 노력을 지원하길 강조했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자행됐을 수 있는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기 위함이다(결의 40/20).

57.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동안 인권이사회 결의 34/24 에 의거하며 총회에서 승인한 자원 한도 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에 관한 책임 규명 독립전문가그룹(이하 “책임규명독립전문가그룹”)이 제시한 권고를 이행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결의 34/24 에 의거하여 진행한 업무를 기술하여 2019 년 3 월 7 일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A/HRC/40/36).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조사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수집한 정보를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과정에 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해당 정보를 분석하여, 조사위원회가 내린 다음의 결론을 확인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위층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정치 및 행정 당국이 이를 이행하여 반인도범죄가 자행됐으며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판단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

¹⁷ 대한민국 “북한이탈주민정책” (2019 년 6 월 20 일 참조 기준).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반인도범죄에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누군지 밝힐 수 있을만한 증거 자료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자행됐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데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으나, 인권이사회 결의 34/24 에 명시된 목표를 완전하게 달성하고 최종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면 할 일이 상당부분 남았다고 결론내렸다.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유엔 기관 활동

5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유엔 기관 활동은 정부 차원의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유엔 기관과 유엔 기관 파트너가 필요(needs)에 따라 인권을 바탕으로 인도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있어, 지역 주민과 별도로 접촉하거나 수혜자와 협의하는 일이 여전히 쉽지 않다. 여전히 현장 접근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하며 대체적으로 활동 중인 지역에 한정되지만, 접근성 및 모니터링 환경은 근래 몇 년 사이 개선됐다. 인도적 활동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유엔 기관 및 정부 간 협력이 이어진 덕분이다. 인도주의 단체의 다국적 직원은 11 개 도(道) 모두에 접근할 수 있고, 주로 기존에 활동하는 지역을 방문한다. 국내외 직원은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고 수혜자와 면담을 진행한다. 유엔 인도주의 단체 및 국제 비정부기구는 2018 년 총 1855 회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고, 854 일 이상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 때 전국 각 도를 모두 방문했다.¹⁸ 활동하는 단체가 목표 수혜자를 결정하며, 이 때 관계 부처 관련자와 협의했다. 하지만 국제 단체가 활동하지 않는 지역까지 포함하여 독립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하는 등 개선할 부분이 있다.

59. 2018 년 모금 총액은 지난 10 년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목표 금액을 76 퍼센트 미달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모금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적은 액수를 기록했고, 결과적으로 해당국 내 인도적 활동이 더욱 제한된다.

60. 2018 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재 조치는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지만, 생명을 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도적 프로그램에 의도치 않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은행 거래에 차질이 생기고 공급망이 붕괴됐으며 해당국 내 필수적인 물품 반입이 지연되고 공여국 지원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관련 인도적 활동을 위한 면제 요청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행안내서(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제 7 호를 2018 년 8 월 발표하는 등 유의미한 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지연이 발생한다. 운송비와 납품소요시간도 계속해서 증가하며, 인도주의 단체가 업체로부터 충분히 조달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은행 거래에 차질이 생겨 초래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도적 활동 이행을 저해한다.

¹⁸ 인도주의 상주조정실 및 파트너, “2019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2019 년 3 월

V. 결론

6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우선적인 의무주체는 정부이다. 조사위원회가 파악했듯이 강력한 법적, 정책적, 제도적 개혁을 통해 경제권, 시민권, 사회권, 문화권, 정치권과 관련하여 국제법에 의거한 정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62. 사무총장은 해당국 정부가 유엔 조약기구와 협력 조치를 취하고,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 참여했으며, 또한 2019 년 5 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한 것을 환영한다. 아울러 정부가 국가 방문을 허용하고 이어서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이러한 협력을 이어나가길 독려한다.
63. 사무총장은 인권이 평화 및 안보, 그리고 개발과 함께 유엔을 이루는 세 축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사무총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계속 진행 중인 활동에 인권 우려를 좀 더 잘 반영할 필요를 강조한다.
64. 사무총장은 유엔이 조사위원회가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이어나가는 것을 환영한다. 유엔 회원국이 관련 유엔 조직 내 활동을 이어나가 조사위원회 및 책임규명독립전문가그룹 권고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길 독려한다. 사무총장은 한반도 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정의 실현과 책임 규명이 핵심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65. 사무총장은 한반도 내 지속 가능한 평화 및 안보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하여 새로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계속되는 노력을 유엔이 전적으로 지원할 것을 재차 확인한다.

VI. 권고¹⁹

66. 사무총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국제 관습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비준한 다섯 개의 핵심 인권 조약을 포함한 국제 인권법 상 발생하는 의무를 준수하며,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및 선택의정서를 비준한다.
- (b)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특별절차 위임권한 수행자 및 조약기구 등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서 제시한 권고를 이행한다. 관련하여 해당 메커니즘 및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을 강화하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제 3 차 정기 보고서를 포함하여 기한을 넘긴 보고서를 유엔 조약체에 제출한다.
- (c) 2018 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를 취하며, 이때 노동 표준 등 국제 인권 표준에 의거한다.

¹⁹ 이전 사무총장 보고서에 제시된 권고도 여전히 유효하다.

- (d) 서울유엔인권사무소와 유의미한 협력을 시작하여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다.
- (e)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국가를 방문하여 모니터링 및 보호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가 해당국 내 구금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f) 특별보고관을 공식으로 국가에 초청하는 등 건설적인 협력을 시작한다. 기타 주제별 특별보고관도 국가에 공식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g) 조사위원회, 책임규명독립전문가그룹 및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파악한 내용 및 권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해당국 내 책임규명과 관련하여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에 명시된 조치를 취한다. (A/HRC/40/36)
- (h) 정치범을 전원 즉각 석방하고, 적용 가능한 국제 인권법을 준수하여 자의적 구금 건을 다루며, 재판 절차가 하루빨리 개시되며 최소한의 표준을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 (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강제송환된 이들이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관련 유엔 기관과 대화하여, 국제 표준에 근거하여 이들의 인권이 반드시 존중될 수 있도록 한다.
- (j) 개인이 필요로 하는 식사 요건(needs)을 충족시킬 만한 양질의 식량 접근이 경제적 및 물리적으로 가능토록 한다.
- (k) 일본, 대한민국 및 기타 국가에서 납치된 이들 가족이 만족할 수 있도록 납치된 이들과 관련된 기록과 생사를 확인한다.
- (l) 대한민국과 협력하여 가족분리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남북 양측 가족이 연락을 이어가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상시 운영되는 제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이산 가족 상봉은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전세계에 분포된 피해자를 포함하여 더 많은 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 (m) 유엔 기관 및 인도주의 단체가 자유롭게 제한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 전뿐 아니라 주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필요(needs)를 파악하고,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고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67. 사무총장은 국제공동체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인권이사회 결의 25/25, 28/22, 31/18, 34/24, 37/28, 40/20 와 총회 결의 69/188, 70/172, 71/202, 72/188, 73/180 에 의거하여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고려한다.
- b) 인권이사회 결의 34/24, 37/28, 40/20 에 의거하여 책임규명독립전문가그룹 보고서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고려한다.

- c) 인신매매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변칙적으로 국경을 넘은 (대부분 인신매매 피해자 여성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을 보호하며, 이들이 보호받고 송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 d) 인도적 지원, 특히 식량과 의약품 지원을 위해 적절하며 지속가능한 자금을 제공하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도적 및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 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상으로 한 제재 조치가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인도적 상황에 의도치 않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하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가 경제 제재 조치와 경제, 사회, 문화권과의 관계를 서술한 일반논평 제 8 호(1997)를 참고한다.
-